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추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 지방공무원의 단계별 감축정원의 신축적인 조정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감축함(477명⇒430명)

- 2000년 7월 31일까지의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477명⇒462명)
- 2001년 7월 31일까지의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462명⇒445명)
- 2001년 7월 31일 이후 동두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445명⇒430명)

나. 동두천지방공무원 정원의 연도별 총수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함.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3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2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①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46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45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표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44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4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	

② 「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집행기관의 정원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17명(집행기관 정원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명(집행기관 정원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급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집행기관의 정원 : 467명</u> <u>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u> <u>총 계 : 477명</u>	<u>제2조(정원의 총수) 동두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43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u> <u>1. 집행기관의 정원 : 420명</u> <u>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명</u>